

제과점 폐업 시 신고할 사항

문 닫을 때 닫더라도 뒤틀 없게

장기불황을 이기지 못하고 문을 닫는 제과점이 속출하고 있다. 문을 닫는 것도 억울한데 세금까지 추가로 추징당하지 않으려면 뒷마무리를 잘해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폐업할 때 세무신고를 꼭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본다.

정리_정술이 기자 · 사진 전문식 · 제품 제작_한불제과제빵학원 한덕호계장

폐업을 하는 경우 대부분 손실을 입어 문을 닫는 경우가 많다보니 폐업 신고 등 법적절차에 신경을 쓸 경향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폐업 시 세금 신고 등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추후에 가산세를 무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폐업과 동시에 세무 신고도 완결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현명하다.

일반적으로 폐업을 할 때는 폐업 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할 때 폐업연월일 및 폐업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이 때 폐업에 따른 세무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으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폐업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이 과세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폐업 전까지 발생한 카드와 현금영수증에 의한 매출이 국세청에 입력돼 신고를 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 때 매출 자료는 그대로 과세하는 반면 매일 자료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폐업 전에 매입한 재고 물품이 있는 경우 남은 물량을 나중에 누군가가 소비할 것으로 간주해 폐업시점에 모두 매각된 것으로 처리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사업 기간 중에 취득한 고정 자산(비품, 건물 등)을 매각하거나 폐기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제 매각대금보다 더 많은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물게 된다.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과세 표준

그 해 재화 시가(時價)에 따라 계산한다. 재화가 감가상각자산(기계 등 사용기간에 따라 가격이 변하는 물품)인 경우 아래 공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재화의 시가(時價)로 본다.

$$\text{시가} = \text{재화 취득금액} \times \{1 - (*\text{체감률} \times \text{경과된 과세기간 수})\}$$

*체감률 : 건물·구축물 = 5%, 기타 감가상각자산 = 25%

소득세

폐업을 하면서 '빚더미에 앉지만 않아도 다행'이라고 말할 정도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가 많아 "소득세가 안 나오겠지"하는 생각에 폐업에 따른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세무서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자료에 따라 추계 과세하므로 사업 손실이 있어도 인정받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정상적인 신고 때보다 더 많은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세금을 체납한 자료가 그대로 남아 사업자로 등록하거나 재산을 취득할 때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세금을 체납하면 국세청 전산 상에 그 자료가 남아 있어 추후에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지체되며 임차 보증금이 압류될 수 있고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체납자 소유재산으로 확인되면 즉시 압류돼 공매 처분될 수 있다. 이외에도 체납자의 해외 출국이나 여권발급이 제한되며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는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폐업에 따른 세무신고를 충실히 마무리해야 한다.



Advice 정동현

〈정동현세무사사무소〉를 운영중인 정동현 세무사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세무 및 경영지원 서비스를 펼치는 활동적인 세무사다. 현재 부동산중개업협회지 〈전국부동산뉴스〉와 차과정보지 〈템포라인〉 등 다양한 잡지에서 세무관련 칼럼을 집필중이다.

※ 12월호를 마지막으로 절세플러스를 마칩니다. 그동안 유용한 절세 비법을 소개해주시는 정동현 세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